

등록번호	재무과-6622
등록일자	2015.07.09.
결재일자	2015.07.10.
공개구분	공개

결 재	★주무관	팀장	재무과장	교수				
	07/09 17:29 모영채	07/09 17:31 오선진	07/09 17:33 김헌재	07/10 10:39 임기건				
협 조	부의장		07/09 17:36 허양일		기획조정처장		07/09 17:52 신윤숙	
	학무본부장		07/09 17:46 최승현		학생처장		07/09 17:57 최정기	
	사무국장		07/09 17:50 선태무		교무처장		07/09 17:58 최영태	

2015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2015

전 남 대 학 교

2015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5. 7. 9.(목) 13:00~15:30							
장 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의 안	1.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안 4. 2015학년도 자체수입금 책정							
심의의결사항	의안 1.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일부 수정 통과							
	원안				수정안			
	제11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통과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안 → 원안 통과 4. 2015학년도 자체수입금 책정 → 원안 통과								
위원명단	당연직	교무처장	최영태	참석	일반직	교수	최응용	불참
		학생처장	최정기	참석		교수	임기건	참석
		연구처장	송진규	불참		직원	정용석	참석
		기획조정처장	신윤숙	참석		직원	김봉선	참석
		사무국장	선태무	참석		학생	정상엽	참석
		학무본부장	최승현	참석		학생	장민수	참석
		평의원회부의장	허양일	참석		외부	박승현	참석
						외부	전종현	참석
위원 15명: 13명 참석, 2명 불참								
작성자	소속: 재무과 직급: 행정주사보 성명: 모영채							

S
T
S
S
O

■ 회의 내용

1. 개의((開議) 선언 (임시위원장인 교무처장, 13:05)

2. 위원장 호선

- 정상엽 위원: 임시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이 맡는 것은 법 제8조제4항에 위반되므로 일반직 위원이 맡아야 함.
- 최영태 위원: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위원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적 관례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무처장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
- 최영태 위원: 박승현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는데 동의 여부를 물음.
< 위원 전원이 박승현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동의함. >
- 임시위원장: 규정 제4조제4항에 의거 재정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위해 위원장을 추천하기 바람.
- 정상엽 위원: 기존 재정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재정TFT 등 재정관련 활동을 4년 동안 거쳐 온 본인을 추천함.
< 장민수 위원의 동의는 있었으나 재청자가 없음. >
- 최승현 위원: 임기건 위원을 추천함.
< 허양일 위원의 동의 후 선태무 위원이 재청함. >
- 임시위원장: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관계로 임기건 단일 후보에 대해 비밀투표를 통해 신임을 묻겠음.
< 장민수 학생위원의 참관을 통해 개표한 결과, 총 13명의 투표자 중 9명 찬성, 1명 기권, 3명 반대 >
- 임시위원장: 임기건 위원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 선출된 위원장이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함. >

3. 안건 심의

가.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재무과장: 회의자료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임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의 지급 등 규정안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이 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평의원회, 학무회의를 모두 거쳤으며, 총학생회에도 공개되었고, 법과 교육부 시행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축조심의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니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람.

- 정상엽 위원: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규정안에 대해 총학생회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재무과장: “규정 제정 TF팀”에서 마련한 규정안을 평의원회, 직원, 조교, 학생 등과 협의하였으나 각 구성원간의 의견이 상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총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유감임.
- 정상엽 위원: 총학생회 의견은 당연직위원은 3명으로 하고, 일반직위원 중 교수: 직원: 학생은 3:3:3으로 하며, 기타 일반직위원 2명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와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합의하여 위촉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최영태 위원: 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각 단체의 의견이 상이하여 부득이 법에 근거하여 최종 구성하게 되었으며, 타 대학의 위원회 구성 현황을 조사해 보더라도 우리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였음.
- 정상엽 위원: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 규정 제정 TFT에 학생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허양일 위원: 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최초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만 하면 됨.
- 정상엽 위원: 규정안 부칙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람.
- 위원장: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람.
- 정상엽 위원: 규정안은 학칙에 따라 평의원회 심의 후 학무회를 거쳤는데, 왜 다시 평의원회의 재심의를 거쳤는지 질문함.
- 허양일 위원: 평의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총장이 평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서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 위원장: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바람.
- 정상엽 위원: 제4조제1항을 “위원은 14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3명과 일반직 11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를 “일반직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원 3명과 직원회가 추천하는 직원 3명,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3명, 그리고 교수·직원·학생·대학본부 모두가 동의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함.
- 위원장: 정상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주기 바람.

- 허양일 위원: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필요함.
- 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물음.
- 장민수 위원: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재청함.
- 위원장: 재청은 동의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 하는데 재청이 없으므로 정상업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하며,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발언 바람.
- 정상업 위원: 제14조제4항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심사위원회 구성에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기를 제안함.
- 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없으므로 정상업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함.
- 최승현 위원: 제11조 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지원에 학생위원도 가능한 지 질문함.
- 선태무 위원: 관련 법령에 구성원은 경비를 못 받게 되어 있으나, 학생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수·직원과 같은 구성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박승현 위원: 교수, 직원, 학생은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이며 봉사직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경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상업 위원: 기성회회계 관련 위원회에서 외부위원과 학생위원에게는 경비가 지원되었으므로 관례대로 지원 바람.
- < 위원 전원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하여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1조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 을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나.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무과장: 지난 해 말 예산편성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한 2015학년도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 예산 878억원에 추가세입 411억원을 합하여 금년 예산은 128,951백만원이며, 회의자료 및 추가 배부 자료(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 내역)에 의거 조정 내역을 설명함.
- 위원장: 세입·세출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특히, 878억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의 선행 검토가 있었던 내용임. 추가 세입금액 411억원에 대한 내용을 학생과 외부위원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지 물음.
- 선태무 위원: 2015학년도 예산안 중 878억원은 기존 재정위원회, 평의원회 심의를 모두 거쳤으며, 이를 다시 대학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임. 기존에 ~~공고~~에 납입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주입대체경비 세입을 제외한 95억원

의 추가 세입을 꼭 필요한 세출에 반영하였음.

- 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음.
- 정용석 위원: 직원과 조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이 34억원만 반영되고 26억원이 미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인지 추경을 통해 반영될 의지가 있는지 물음. 또한 의대 이전비는 23억을 요청했는데 18억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은 자구노력만으로 확보가 어려운 큰 예산인데 이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음.
- 재무과장: 직원과 조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세입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34억원만 반영하였으며 추가 세입이 발생한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의대 이전비용 삭감은 학동에 남아 있는 시설을 병원이 활용하고 화순캠퍼스도 병원의 지원을 받는 등 의대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대와 합의된 사항임.
- 정상엽 위원: 교수와 직원이 예전에 받았던 수당과 관련하여 교수는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었고 직원은 일부만 반영되었는데 직원에 해당하는 예산도 교수처럼 보전되어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재무과장: 세입 재원 부족으로 지금은 여력이 없고, 추가 재원 발생 시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 전원이 원안승인에 동의하여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안

- 최영태 위원: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의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새로운 국립대 회계재정법을 제정하고 교직원의 급여보조성경비를 일원화하여 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함. 국립대 교수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교수의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직원과 조교의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관계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같은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임. 교수의 계획서 제출 - 단대 심사 - 본부 총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함을 회의자료 및 추가 배부된 수정 자료에 의거 설명함.
- 위원장: 일반직 교수위원 1명은 불참이고, 1명은 위원장이므로 누가 교수위원을 대신하여 의견이 있다면 발언바람.
- 허양일 위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비용의 법령상 취지는 교수의 교육연구 역량강화가 그 취지이지만, 국립대 교수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

실에서 급여보조성 성격이 큼. 3월 이후 정액연구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신입교수들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라고 함. 본부의 지급기준안 대로 시행되었을 때 전년도 대비 최소 90% 정도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요청함. 향후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를 바람.

- 최영태 위원: 올해 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며, 차등 지급 문제는 기존의 성과급 지급이 있으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10%정도를 차등화 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현실을 반영도록 노력하겠음. 비용의 선금지급 기준안 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규정 형태로 만들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교수, 직원, 조교도 단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직원과 조교의 기준은 교육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후 완성된 기준을 심의해야 함.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주기를 바람.

- 정용석 위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이 직원과 조 교의 기준도 함께 심의되면 좋은데, 직원과 조교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 려움. 이 기준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에도 반영되는 내용으 로써 혁신지원사업 제출기한 7. 25. 이전에 재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를 요청함. 또한 직원과 조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미 반영된 26억원 예산이 추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요청함.

- 최영태 위원: 교육부에 보고한 후 차후 정식으로 협의해서 규정 혹은 지침 화할 것임. 이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답변함.

< 위원 전원이 원안승인에 동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 급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라. 2015학년도 자체수입금 책정

- (재무과장의 자체수입금 책정에 대한 설명 후 위원들의 발언이 없자)

< 위원 전원이 원안승인에 동의하여 2015학년도 자체수입금 책정이 원안대 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

■ 기타 건의사항

- 정용석 위원: 7월 20일이 있는 그 주에 조교와 직원의 기준이 완성될 예정 이니 그 주에 차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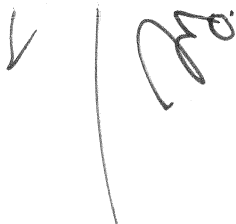
- 위원장: 회의자료가 확정되기도 전에 차기 회의 개최일 일자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 허양일 위원: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총장이 세입원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세입 총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단과대학에 대한 배정액이 올해도 삭감되고 매년 감소 추세인데 대학회계의 재원은 학생의 등록금이 주요 재원이므로 등록금 대비 단과대학 배정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또한 직원과 조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하며, 교수에게 차등지급을 최소화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정상엽 위원: 사전에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기 바람.
- 재무과장: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할 것임.

■ 폐회 선언 (위원장 15:30)

2015. 7. 9.

기록자: 서기 (경리팀장) 오 선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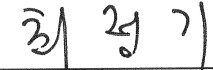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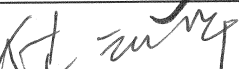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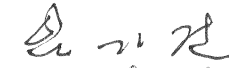




확인자: 간사 (재무과장) 김 현 재




제1회 재정위원회 등록부

I. 일시 : 2015. 7. 9.(목) 13:00~

II. 장소 :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연번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1	당연직 (7명)		교무처	처장	최영태			
2			학생처	처장	최정기			
3			연구처	처장	송진규	불감		
4			기획조정처	처장	신윤숙			
5			사무국	국장	선태무			
6			학무본부	본부장	최승현			
7			평의원회	부의장	허양일			
8	일반직 (8명)		교원	경영대학	교수	최응용	불감	
9				자연과학대학	교수	임기건		
10			직원		생활관	행정주사	정용석	
11					총무과	대학회계7급	김봉선	
12			학생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4학년 (광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정상엽	
13								문화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14			외부인사	총동창회	영진종합건설(주)	회장	박승현	
15				학부모	광주은행	준법감시부팀장	전종현	